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36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양금희·김상훈·정희용

서범수 · 구자근 · 권성동

배준영 · 서일준 · 임이자

윤두현 • 최춘식 • 김도읍

박 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

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되어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구체 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함(안 제9조제4항).
- 다.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 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2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를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 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조정위원회의"를 "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

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 속한 인·허가등
-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은 "선 도사업의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조성·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조제2호: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 제25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라 전 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 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 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한다. 3. • 4. (생략)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전략기술의 지정・변 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미 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 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개 정 아 1. (현행과 같음) -----이에 필요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 3. • 4.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 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 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 <삭 제>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 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이 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⑥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위원 | <삭 제>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 이 위촉한다.
- ⑦ (생략)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 기 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 및 해제 등) ① -----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심 의 및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⑤ (현행과 같음)

<u>(6)</u>		
	- <u>위원회</u>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수 있다.

③ ~ ⑧ (생 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②	
	- <u>조정위원회</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 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 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 다.
- 1.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

 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신속한 인・허가등
-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
-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 ①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 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 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특화단지 조성·운영"또는 "특화단지의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